

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채납절차 안내

1 한국문화예술진흥원

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1973년 10월 11일 설립된 법인입니다.

2 근거 조성

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제2항 ‘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’는 규정에 근거하여 기부금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.

3 세제 혜택

개인이나 기업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본원에 출연한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●개인인 경우

공제한도액 = 근로소득금액(과세대상근로소득 - 근로소득공제액) X 50%

●법인인 경우

손금인정한도액 = {당해 연도 소득금액(당해 연도 총익금 - 총손금) - 이월결손금} X 50%

단, 이 법률은 2003년까지 적용되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한도초과금액을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다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.

※ 기부금의 일반적인 세제 혜택

-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

공제한도액 = 근로소득금액(과세대상근로소득 - 근로소득공제액) X 10%

- 법인세법 제24조

손금인정한도액 = {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-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 + 결손금} X 5%

-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,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

기부금 범위 :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

4 채납절차 안내

기부금에는 기부조건 없이 출연하는 ‘순수기부금’과 구체적인 기부조건 즉 기부 대상자와 기부 대상사업을 기부자가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는 ‘조건부기부금’ 등 2가지 기부금 제도가 있습니다.

●순수기부금

순서	해 당 자	채 납 절 차	비 고
①	기부자	‘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신청서’ 제출 및 기부금 전달 * 은 행 명 : 국민은행 혜화지점 계좌번호 : 031-25-0007-597 예 금 주 : 한국문화예술진흥원	● 기부신청서(진흥원 소정양식에 의거) 우편제출, fax전송 중 택일 ● 기부금은 계좌입금, 직접 전달 가능 ● 담당부서 : 기금개발운영팀(760-4540~7)
②	진흥원	기부금 영수증 발급	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

●조건부기부금

순서	해 당 자	채 납 절 차	비 고
1	기부자	‘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신청서’ 제출 및 기부금 전달 * 은 행 명 : 한빛은행 혜화지점 계좌번호 : 057-089055-13-082 예 금 주 : 한국문화예술진흥원	● 기부신청서(본원 소정양식 의거) 우편제출, fax전송 중 택일 ● 기부금은 계좌 입금, 직접 전달 가능 ● 담당부서 : 기부대상사업 관련부서 문학/미술관련사업 : 문학미술팀 (760-4560 2) 지역문화/청소년 문화예술관련사업 : 문화총괄팀 (760-4551 3) 연극/무용/음악/대중/전통예술관련 : 공연예술팀 (760-4580 3) 국제교류 문화예술관련사업 : 국제교류팀 (760-4571 4)
2	기부금수혜자	‘세부사업계획서’ 제출	본원 소정양식에 의거 제출
3	진흥원	‘세부사업계획서’ 접수 및 기부금 채납여부 결정	
4		채납여부 기부자에게 통보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	*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
5		기부금 수혜자에게 지원금 지급	기부금 수혜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
6	기부금수혜자	행사개최 후 ‘사업결과보고서’ 제출	행사개최 후 30일 이내에 진흥원에
7	진흥원	‘사업결과보고서’ 검토 및 사업종료	